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성립상의 법적 문제

Legal Problems of the Contract Formation by the Electronic Declaration of Intention

김 선 광*
Sun-kwang Kim

요 약 (ABSTRACT)

UNCITRAL에서 제정한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과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기본법(안)"을 참조하여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성립상의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청약의 경우나 승낙의 경우 모두 전자적 의사표시 방식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특정 정보를 보내는 송신(발신)시점과 이러한 정보를 상대방이 취득하는 수신(도달)시점과의 구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컴퓨터에 의한 계약성립상의 송신시점과 도달시점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작성자와 수신자간에 다른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신시점은 송신된 전자적 의사표시가 작성자 또는 작성자를 대리하여 데이터 메시지를 발신한 대리인의 지배를 벗어나 어떤 정보시스템에 들어간 때가 된다. 여기에서 어떤 정보시스템이란 첫째로 당사자간의 컴퓨터가 컴퓨터망을 통해 직접 연결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컴퓨터가 될 것이고, 둘째로 당사자들의 컴퓨터가 특정 전자사서함에 연결되어 그곳을 통해 전달하고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사서함이 될 것이다.

한편 전자적 의사표시가 인간에 의한 자연적 의사표시와 동일시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이를 동일하게 약정함으로써 전자적 의사표시는 기존의 법률사실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민법에서 자연적 의사표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다만 컴퓨터의 기능을 인간의 구체적으로 완성된 의사를 단순히 표시하거나 전달하는 수준 이상으로 컴퓨터 이용자의 의사영역에 개입하는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전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특별한 문제들을 함께 검토하였다. 즉 그 대표적인 예로써 표의자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중에서 입력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든지, 정보처리장치의 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든지, 정보처리장치나 프로그램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든지, 네트워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컴퓨터라는 수단을 이용한 의사전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 경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Key Word : 전자적 의사표시, 계약성립, 컴퓨터, 표의자

<목 차>	
I. 서 론	1.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II. 전자적 의사표시의 특성에 따른 계약 성립상의 문제제기	2. 전자적 의사표시의 발신시점 3. 전자적 의사표시의 도달시점
1. 전자적 의사표시와 자연적 의사표시 와의 동질성 문제 2.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상거래상의 목시적 조건 3.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점 4. 전자적 의사표시상의 하자발생 문제 5. 사기·강박에 의한 전자적 의사표시 상의 문제	IV. 비정상적인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성립상의 법적 문제 1. 부실표시에 의한 의사표시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3.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III.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성립시점 상의 법적 문제	V.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I. 서 론¹⁾

정보화시대에 컴퓨터가 그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컴퓨터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의 대표적인 네트워크인 인터넷은 단순한 통신수단을 넘어 물리적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계약당사자간의 상거래를 성사시켜 주기도 한다. 즉 인터넷은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매수인에게 품질조건이나 가격조건 등의 제시를 통해 매도인과 거래를 성사시켜 주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고, 해당 거래와 관련한 보안을 유지시켜 주기도 하며, 대금지급을 비롯한 각종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계약체결방식은 기존의 전통적인 계약체결방식과는 다른 독특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기계들과 마찬가지로 컴퓨터가 제대

1) 본 고에서는 송신과 발신을 유사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수신과 도달을 유사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발신자와 발신인, 수신자와 수신인도 유사용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 그리고 작성자와 표의자(의사표시를 표명하여 보내는 자)도 유사용어로 사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이 이외에도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기본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문서"와,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메시지"를 유사용어로 사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바, 이러한 하드웨어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계약유형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약서상에 그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포함시켜 놓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상의 오류는 진단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계약서상에 규정하기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프로그램 전체의 구조가 이해되지 않는 한 부분적인 수정은 또 다른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컴퓨터에 의해 생산되는 자료는 입력 및 그 자체가 정확할 때에만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컴퓨터에 의해 이루어지는 계약체결과정에서 하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계약의 성립여부에 관한 법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한편 컴퓨터에 의해 이루어지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를 오늘날 「전자적 의사표시」라 한다. 즉 「전자적 의사표시」란 “인간이 사전에 입력한 포괄적 의사를 컴퓨터가 전자적 코드로 전환하여 그 설비에 고유한 부호로 정형화한 후 일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표시내용을 구체화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의사표시”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적 의사표시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인간에게 귀속시켜야 하는 바, 그 근거로써 컴퓨터는 창조적인 의사형성능력을 결여한 기계인 동시에 권리능력이 없는 사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자적 의사표시를 인간에게 귀속시키게 될 경우, 전자적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라는 기존의 법률행위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전자적 의사표시를 별도의 새로운 법률사실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해서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계약을 다른 별개의 법률사실에 의한 법률행위로 인정할 필요는 없으며,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은 기존의 자연적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계약의 법률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면 된다.

그런데 전자적 의사표시를 자연적 의사표시라는 기존의 법률사실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전자적 의사표시가 자연적 의사표시와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구성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그 해석론적 관점에서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는 컴퓨터를 기존의 표시도구나 전달도구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컴퓨터에 입력되는 프로그램, 데이터, 작업명령 등에서 인간의 의사표시가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으므로, 컴퓨터의 기능은 그러한 구체적인 인간의 의사표시를 기계적 작동으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전자적 의사표시는 종래의 자연적 의사표시와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구성되는 바, 이러한 견해에 따를 경우 전자적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없게 된다.

다른 하나는 컴퓨터의 기능을 프로그램, 데이터, 작업명령 등에 포함된 인간의 구체화되지 않은 포괄적 의사에 따라 인간의 의사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즉 이는 컴퓨터가 인간의 의사형성을 전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체화되지 않은 세부적인 의사표시의 내용과 성립에 간여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컴퓨터는 그 역할의 수준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의사를 형성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使者와 같이 이미 구체적으로 완성된 의사를 단순히 표시하거나 전달하는 수준 이상으로 컴퓨터

이용자의 의사영역에 개입하는 것으로 파악하게 된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후자의 견해를 근거로 비정상적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성립상의 법적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본 고에서는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성립시점상의 법적 문제를 영미법과 대륙법 및 비엔나협약의 규정내용들을 참조하여 청약과 승낙의 관점에서 분석해 본 후, 앞에서 논의한 컴퓨터상의 소프트웨어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와 같은 전자적 의사표시만의 독특한 특성에 근거하여 발생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성립상의 법적 문제들을 우리나라 민법을 근거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또한 장차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의 계약체결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제반 법적인 문제들을 UN에서 제정한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²⁾을 참조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그리하여 아직 법제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법 제정과 관련하여, 그리고 장차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상거래 부문에서의 계약당사자간의 법적분쟁 발생시 분쟁해결과정에서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 본고의 연구목적이다.

II. 전자적 의사표시의 특성에 따른 계약성립상의 문제제기

1. 전자적 의사표시와 자연적 의사표시와의 동질성 문제

전자적 의사표시가 인간에 의한 자연적 의사표시와 동일시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즉 전자적 의사표시가 이루어지는 수단인 컴퓨터는 창조적인 의사형성능력이 결여된 기계인 동시에 권리능력이 없는 단순한 물건에 지나지 않는 바, 이러한 전자적 의사표시를 인간에 의한 자연적 의사표시와 동일시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적 의사표시는 그 효력의 귀속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과 의사표시의 성립 및 내용은 전자매체인 컴퓨터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본질적인 의사결정은 인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전자적 의사표시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인간에게 귀속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적 의사표시를 인간의 전자적 의사표시와 동일하게 인정함으로써, 전자적 의사표시는 기존의 법률사실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결과 전자적 의사표시를 새로운 법률사실로 인정할 필요가 없는 바,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을 다른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행위로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³⁾ 다만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컴퓨터의 기능은 인간의 구체적으로 완성된 의사를 단순히 표시하거나 전달하는 수준 이상으로 컴퓨터 이용자의 의사영역에 개입하는 것으로 파

2) 이 법에서는 전자메시지의 효력 및 법적 구속력, 전자서명의 인정 및 효력, 전자서명 인증기관 및 배상책임, 해상운송서류의 법적 문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단지 각 국가들의 관련법 제정시 참조법률로 활용될 수 있도록 UNCITRAL(UN 국제무역법위원회)에서 제정한 것이다.

3) 오병철, “전자적 의사표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2, 국문요약 viii 참조.

악할 수 있을 뿐이다.

2.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상거래상의 묵시적 조건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상거래계약에서도 자연적 의사표시에 의한 상거래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묵시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물품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제 3자의 권리(지적재산권 등) 또는 청구권에 구속되지 않는 물품을 인도해 주어야 한다든지,⁴⁾ 물품명세와 동일한 물품으로써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해 주어야 한다든지,⁵⁾ 계약체결시 매수인이 그 물건의 구입목적을 표시하였거나 또는 매도인의 기술 및 판단에 의해 물건을 선택한 경우 그 물건은 해당 목적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등의 묵시적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상거래상의 묵시적 조건들도 자연적 의사표시에 의한 상거래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상거래상의 제반 묵시적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⁶⁾

3.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점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전자적 의사표시의 발신시점 및 도달시점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매체는 24시간 계속해서 가동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낮과 밤의 구분없이 전자적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전자매체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어느 시점을 도달시점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즉 근무시간 외에 전자적 의사표시가 도달되었을 경우 계약성립시점을 결정짓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⁷⁾

또한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청약과 승낙시 청약이나 승낙의 철회 또는 취소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철회나 취소가 가능하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⁸⁾ 이는 결국 법적인 문제로써 본 고의 제 3장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4. 전자적 의사표시상의 하자발생 문제

전자적 의사표시는 자연적 의사표시와 다른 진행과정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며, 따라서 그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예를 들면 의사형성 단계의 하자, 전자적 의사선정 단계의 하자, 입력 단계에서의 하자, 의사구체화 과정에서의

4) 미국 통일상법전 제2절 312조, 영국의 물품매매법(1979) 제 12조 (2)항, 비엔나협약 제 41조 참조.

5) 미국 통일상법전 제2절 314조, 영국의 물품매매법(1979) 제14조 (2)항, 비엔나협약 제35조 (2)항 (a)호 참조.

6) 미국 통일상법전 제2절 315조, 영국의 물품매매법(1979) 제14조 (3)항, 비엔나협약 제35조 (2)항 (b)호 참조.

7) 최경진, “전자화된 의사표시와 전자계약 ①”, 「정보산업」, 통권 179호, 1997. 3, p.29.

8) 최경진, “전자화된 의사표시와 전자계약 ②”, 「정보산업」, 통권 180호, 1997. 4, p.28.

하자, 표시과정상의 하자, 전달과정상의 하자 등이 발생될 수 있다. 그리고 의사구체화 과정의 하자는 다시 소프트웨어상의 하자, 하드웨어상의 하자, 계산착오에 의한 하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⁹⁾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하자가 발생된 경우 표의자가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한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문제는 각 국가의 법률 및 판례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또 다른 준거법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5. 사기·강박에 의한 전자적 의사표시상의 문제

전자적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라든지 제3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또는 무능력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당사자는 이에 대한 계약취소의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가 하는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그 취소가 가능하다는 기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¹⁰⁾ 그 근거로써 전자적 의사표시에 있어서 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이는 컴퓨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컴퓨터의 이용자에게 행해지게 되는 바, 그러한 협박에 의한 전자적 의사표시는 자연적 의사표시에서의 협박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능력자에 의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무능력자를 강하게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 무능력자에 의한 전자적 의사표시는 그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실제적으로는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거래 상대방이 무능력자임을 알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양자간의 합리적인 조화가 요구되는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겠다.

III.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성립시점상의 법적 문제

계약은 그 성립을 원하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 합의는 일방적으로 일방 당사자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이라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에서 청약이란 “상대방의 승낙을 기다려 일정한 계약의 내용을 성립시키기 위한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의사를 언어나 행동으로 알리는 것”¹¹⁾으로 정의할 수 있는 바, 따라서 청약이란 특정인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행하는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승낙이란 “청약에서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상대방이 청약의 조건에 따르겠다는 동의의 표시”¹²⁾로 정의할 수 있는 바, 결국 승

9) 오병철, 전계논문, p.140.

10) 우리나라 민법 제 110조 참조.

11) 김선광, 「무역계약론」, 느티나무, 1995, p.21.

12) 김선광, 상계서, p.26.

낙이란 청약에 따라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표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 의한 동의표시가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계약성립시점이 달라질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비엔나협약」¹³⁾에서는 통신의 도달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즉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되지 않는 한 승낙의 효력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미법계에서도 승낙은 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격지자간의 거래에서 우편이나 전보에 의한 승낙의 의사표시의 경우에 대해서는 발신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영미법에 의하면 승낙자가 청약자에게 승낙에 대한 의사표시를 우편이나 전보에 의한 통신수단으로 발신하는 순간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어, 그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되게 된다. 이를 도표로 요약·정리하면 다음의 <표 - 1>과 같다.

<표 - 1> 승낙의 의사표시에 대한 효력발생시기

준거법		한국법, 일본법	영국법, 미국법	비엔나협약
통신수단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승낙의 의사 표시	대화 자간	대면	도달주의	도달주의
		전화나 텔레екс	도달주의	도달주의
	격지 자간	우편이나 전 보	발신주의	도달주의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 그런데 전자적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어느 시점을 발신시점으로 볼 것이며 또 한 어느 시점을 도달시점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청약이나 승낙의 철회가 가능한지의 여부, 그리고 컴퓨터에 의해 전달되는 「전자문서」¹⁵⁾에 대한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등이 발생될 수 있다. 전자문서에 의한 송·수신과 관련하여 그 특성상 자연적 의사표시의 경우와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바, 이러한 제반 문제들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부터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13) UN에서 설립한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 비엔나협약」을 제정하였다. 이는 1980년에 UN외교회의에서 62개국 중 8개국이 이를 정식으로 채택하였으며, 1986년 12월에 미국, 중국, 이탈리아가 이를 채택함으로써 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4) 김선광, 전계서, p.29.

15)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전송 또는 저장될 수 있는 형태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UNCITRAL(UN 국제무역법위원회)에서 제정한 「전자상거래 모델법」에 의하면 데이터 메시지¹⁶⁾의 효력과 관련하여 데이터 메시지 형태의 자료는 충분한 증거력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⁷⁾ 따라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어떠한 증거법 원칙도 i) 그것이 데이터 메시지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ii)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이 그것을 입수하여 제출할 수 있는 최상의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원본의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로서의 데이터 메시지의 효용성이 부인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계약성립을 위한 당사자간의 청약과 승낙은 데이터 메시지의 수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계약성립 과정에서 데이터 메시지가 사용된 경우, 그 계약은 계약성립을 위해 데이터 메시지가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과 구속력이 부인되지 않는다.¹⁸⁾ 또한 당사자간의 데이터 메시지의 효력과 관련하여 작성자와 수신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표시는 그것이 데이터 메시지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효력, 유효성, 구속력이 부인되지 않는다.¹⁹⁾

한편 UNCITRAL의 「전자상거래 모델법」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전자상거래 기본법(안)」에서는 데이터 메시지라는 용어 대신에 전자문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자문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 전송 또는 저장될 수 있는 형태의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²⁰⁾ 「전자상거래 기본법(안)」에 의하면 전자문서는 특별히 그 효력을 부인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²¹⁾ 전자문서는 재판절차나 기타의 법적 절차에서 원본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²²⁾ 그리고 적절하고 신뢰성있는 전자서명은 특별히 그 효력을 부인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이 특정인에게 요구하는 서면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²³⁾

2. 전자적 의사표시의 발신시점

전자적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발신시점을 파악해야 하므로 법적인 측면 이외에 기술적인 측면까지도 반영하여 그 발신시점을 결정해야 한다. 이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송·수신상의 돌발적인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

16) 데이터 메시지(Data Message)란 “EDI, 전자메일, 텔레그램, 텔레스, 멜레카피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생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의미한다.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 제 2조 참조).

17)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 제 8조 참조.

18)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 제 11조 참조.

19)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 제 12조 참조.

20)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기본법(안) 제 2조 (용어의 정의) 참조.

21)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기본법(안) 제 4조 (전자문서의 효력) 참조.

22)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기본법(안) 제 7조 (전자문서의 증거능력 및 증거력) 참조.

23)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기본법(안) 제 5조 (전자서명의 효력) 참조.

할 것이며, 또한 그 위험을 어느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침약될 수 있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청약의 경우나 승낙의 경우 모두 전자적 의사표시 방식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특정 정보를 보내는 송신(발신)시점과 이러한 정보를 상대방이 취득하는 수신(도달)시점과의 구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UNCITRAL에서 제정한 「전자상거래 모델법」과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기본법(안)」을 참조하여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수신개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술적 측면에서 검토한 후, 계약성립을 위한 청약과 승낙의 효력발생에 관한 법적인 측면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기술적 측면

UN의 「전자상거래 모델법」에서는 데이터 메시지의 귀속문제와 관련하여 i) 데이터 메시지가 작성자²⁴⁾를 대표할 대리권을 가진 사람에 의해 송신되거나, ii) 작성자에 의해 프로그래밍되거나 작성자를 대신하여 자동으로 실행되는 자료시스템에 의해 송신된 경우, 그 데이터 메시지는 작성자의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⁵⁾ 따라서 작성자와 수신자간에 있어서 i) 데이터 메시지가 작성자가 송신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신자가 미리 합의된 방법으로 적절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ii) 작성자와 관련이 있는 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이 행위한 결과에 의해 수신자가 데이터 메시지를 수취하게 된 경우, 수신자는 그 데이터 메시지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고 그에 기초하여 행동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작성자가 데이터 메시지에 수신확인조건을 기재한 경우에는 수신확인이 작성자에게 도착되기 전까지는 그 데이터 메시지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된다.²⁶⁾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작성자가 수신확인 메시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데이터 메시지가 수신자에게 수신된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그런데 작성자가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하지 않은 경우로써 특정된 시간이나 합의된 시간 내에 또는 시간이 특정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 내에 수신확인이 작성자에게 도달되지 않은 경우, i) 작성자는 수신확인이 도착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수신확인이 도착되어야 할 상당한 시간을 특정하여 수신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ii) 위와 같은 시간 내에 수신확인이 도착되지 않은 경우 작성자는 데이터 메시지가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다루거나²⁷⁾ 또는 메시지에 포함된 어떠한 권리도 수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통지할 수 있다.

따라서 작성자가 송신한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확인통지를 요구했거나 당사자가 합의

24) 작성자는 청약자일 수도 있고 승낙자일 수도 있다.

25)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 제 12조 참조.

26)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 제 13조 참조.

27) 이는 청약의 철회 또는 승낙의 철회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다만 이는 도달주의 원칙에 근거해서 그 철회가 가능한 것이며, 승낙의 효력발생시점과 관련하여 우편이나 전보에 의한 승낙의 경우 영미법과 우리나라 민법의 경우에는 발신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승낙의 철회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 근거로써 발신주의하에서는 승낙사실을 발신하는 시점에서 승낙이 그 효력을 발생시킴으로써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에 의해 수신확인통지를 약정한 경우로써, 약정기간 내에 또는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수신자로부터 수신확인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작성자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을 철회할 수 있다.²⁸⁾ 이러한 철회통지는 전자문서를 송신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작성자가 그 방법을 정하여 통지하되 수신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²⁹⁾

그리고 작성자와 수신자간에 다른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데이터 메시지의 송신시점은 송신된 데이터 메시지가 작성자 또는 그 작성자를 대리하여 데이터 메시지를 발신한 대리인의 지배를 벗어나 어떤 정보시스템에 들어간 때가 된다.³⁰⁾ 여기에서 어떤 정보시스템이란 첫째로 당사자간의 컴퓨터가 컴퓨터망을 통해 직접 연결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컴퓨터가 될 것이고, 둘째로 당사자들의 컴퓨터가 특정 전자사서함에 연결되어 그곳을 통해 전달하고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사서함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작성자 또는 그 작성자를 대리하여 전자문서를 발신한 대리인의 지배를 벗어나 특정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³¹⁾ 그러나 i)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송신되었음을 해당 전자문서의 수신과 동시에 또는 상당한 기간내에 통지받은 경우와 ii) 수신자가 소정의 확인절차를 따르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송신되었음을 알 수 있었던 경우, 해당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2) 법적 측면

전자적 의사표시를 대화자간의 의사표시로 볼 것인가 아니면 격지자간의 의사표시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계약성립을 위한 승낙의 효력발생시점과 관련하여 격지자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영미법과 우리나라 민법에서 비엔나협약과는 달리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³²⁾ 그러나 대화자간의 거래에서는 영미법과 우리나라 민법에서 비엔나협약과 같이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화자간의 의사표시로 볼 것인가 또는 격지자간의 의사표시로 볼 것인가에 따라 법적으로 계약성립시점이 달라지게 되며, 격지자간의 의사표시로 볼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어느 시점이 전자적 의사표시의 발신시점인가가 문제될 수 있게 된다.

전자적 의사표시가 대화자간의 의사표시인가 아니면 격지자간의 의사표시인가에 대하여 여러 학설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반된 주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송신자와 수신자간의 컴퓨터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격지자간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리고 이와는 달리 컴퓨터를

28)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기본법(안)」, 제 13조 ①항 참조.

29)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기본법(안)」, 제 13조 ②항 참조.

30)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 제 14조 참조.

31)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기본법(안)」, 제 8조 참조.

32) 본고의 <표 - 1> 참조.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표시의 송신(발신)과 수신(도달)은 사실상 동시에 이루어지는 직접적 대화자간의 거래와 다를 바 없으며 또한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즉각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대화자간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후자의 경우 전자적 의사표시는 대화자간의 거래이므로 우리나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도달주의에 입각해 그 효력발생시점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격지자와 대화자의 구별기준은 거리적·장소적·시간적 관계에 의거해 구별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람과 사람간의 직접적 대화나 신호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³³⁾ 그런데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표시는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화나 신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전자적 의사표시는 전자사서함을 통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격지자간의 의사표시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중요한 점은 기술적으로 어느 시점이 전자적 의사표시의 발신시점인가 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즉 전자적 의사표시를 격지자간의 의사표시로 볼 경우 영미법과 우리나라 민법 및 일본 민법에서는 계약성립시점을 결정짓는 승낙의 효력발생시점이 발신주의 원칙에 의거해 결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적 의사표시의 발신시점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간의 컴퓨터망을 통해 직접 연결되어 전자적 의사표시를 주고받는 경우와, 당사자들의 컴퓨터가 일정한 전자사서함에 연결되어 그곳을 통해 전달하고 수령하는 경우로 구분해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컴퓨터망을 통해 직접 연결되어 전자적 의사표시를 주고받는 경우에는 송신자의 컴퓨터가 구체화된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송할 수 있게 만들어 상대방의 컴퓨터를 향해 보내지는 순간 전자적 의사표시의 발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발신주의에 의하면 이 시점 이후에 발생되는 컴퓨터망의 하자로 인한 위험 등은 수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자적 의사표시가 전자사서함³⁴⁾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에는 전자사서함에 입력된 전자적 의사표시가 수신자의 요구가 있을 때까지 보관된다. 즉 수신자인 상대방이 컴퓨터를 켰을 때 자신을 위해 보관된 정보가 전자사서함에 있음을 알게 되고, 이때 수신자는 그 전자적 의사표시의 수령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전자사서함을 이용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발신시점은 해당 정보가 전자사서함에 입력되는 순간 발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그 결과 발신주의 원칙을 채택하는 경우, 송신자는 전자적 의사표시를 적절한 방법으로 전송하여 전자사서함에 입력되기까지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수신자는 해당 정보를 전자사서함으로부터 수령하여 처리하는 과정까지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33) 오병철, 전자 논문, p.131.

34) 회선을 직접 보유하거나 통신업자의 회선을 이용하여 음성 혹은 데이터 정보의 축적, 가공, 검색, 변환, 전송, 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부가가치통신망(VAN : Value Added Network)이라 한다. 이러한 부가가치통신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메시징 서비스, 정보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메시징서비스에는 전자사서함 서비스, 전자문서교환 서비스, 컴퓨터예약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3. 전자적 의사표시의 도달시점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을 격지자간의 거래로 파악할 때, 승낙의 효력발생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성립시점을 결정하는 도달시점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도달은 발신자의 의사표시가 수신자로 하여금 인식할 수 있도록 수신자의 세력범위 내에 존재해야만 한다. 따라서 도달은 수신자의 지배 영역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수신자에게 그 내용이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³⁵⁾

예를 들어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에 의하면 전자적 의사표시의 도달과 관련하여 '작성자가 데이터 메시지에 수신확인조건을 기재한 경우에는 수신확인이 도착되기 전까지는 그 데이터 메시지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작성자가 수신확인 메시지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된 데이터 메시지가 수신자에게 수신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³⁶⁾ 그리고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의 수신시점은 다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³⁷⁾ 즉 첫째로 수신자가 데이터 메시지 수신을 위한 독자적인 정보시스템을 지정한 경우에는 데이터 메시지가 그 지정된 정보시스템에 들어온 때, 또는 지정된 정보시스템이 아닌 수신자의 다른 정보시스템으로 데이터 메시지가 송신된 경우에는 수신자에 의하여 해당 데이터 메시지가 취득된 때가 데이터 메시지의 수신시점이 된다. 둘째로 수신자가 정보시스템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데이터 메시지가 수신자의 정보시스템에 들어온 때가 수신시점이 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기본법(안)에 의하면 i) 전자문서가 수신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되었을 때 또는 지정한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때,³⁸⁾ ii)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컴퓨터 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신자가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등에라도 입력된 때³⁹⁾에 전자문서가 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송신된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확인통지를 요구하거나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수신확인통지를 약정한 경우로써 그 통지방법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수신자는 그 방법을 정하여 통지하되 수신사실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⁴⁰⁾ 또한 수신확인통지가 없는 경우 무효임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가 도달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전자적 의사표시의 도달은 물론 송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무효 처리하고 있다.⁴¹⁾

35) 오병철, 전계 논문, p.134.

36)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 제 13조 참조.

37)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 제 14조 참조.

38)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기본법(안) 제 8조 ②항 1호 참조.

39)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기본법(안) 제 8조 ②항 2호 참조.

40)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기본법(안) 제 12조 ①항 참조.

41)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기본법(안) 제 12조 ②항 참조.

전자적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문제도 앞에서 살펴 본 전자적 의사표시의 발신과 마찬가지로 직접 컴퓨터망에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경우와 전자사서함 방식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경우로 구분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전자적 의사표시가 당사자간에 컴퓨터망으로 직접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대방 컴퓨터망의 모뎀에 접속되는 순간을 도달시점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도달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전달과정에서 파괴나 삭제 또는 변형됨으로써 장애가 발생되면 그 전자적 의사표시는 도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유효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전자적 의사표시의 발신시점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작성자 또는 그 작성자를 대리하여 전자문서를 발신한 대리인의 지배를 벗어나 특정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발신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앞에서 논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발신과 수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전자사서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발신자의 전자적 의사표시가 전자사서함에 저장된 사실을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컴퓨터가 인식하여 상대방이 그 전자적 의사표시를 전송하도록 명령하는 순간에 도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⁴²⁾ 그러므로 승낙의 효력발생시점과 관련하여 도달주의가 채택되는 경우 발신자는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컴퓨터가 자신의 컴퓨터에 전송하도록 명령하기 전까지(발신 후 도달 전까지)는 해당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야간이나 또는 상대방이 근무하지 않는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전자적 의사표시가 전자사서함에 전달된 경우에는 수신자의 전송명령이나 수신자 컴퓨터의 자동화된 전송명령시점 이전에는 해당 의사표시가 도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이러한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철회나 승낙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의 무역자동화법에서는 전자문서의 도달시기는 그 발신자가 보낸 메시지가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며,⁴³⁾ 발신자의 메시지가 사업자 또는 지정사업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후 통상 전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⁴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화물유통촉진법에서도 전자문서는 전달사업자의 전자계산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후 상대방의 전자계산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며,⁴⁵⁾ 전달사업자의 전자계산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후 통상 전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된 때에 상대방의 전자계산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⁴⁶⁾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문서의 도달시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앞의 내용들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⁴⁷⁾

42) 오병철, 전계 논문, p.135.

43) 우리나라의 무역자동화법 제 15조 1항 참조.

44) 우리나라의 무역자동화법 제 15조 2항 참조.

45) 우리나라의 화물유통촉진법 제 48조의 5 ①항 참조.

46) 우리나라의 화물유통촉진법 제 48조의 5 ②항 참조.

47) 우리나라의 화물유통촉진법 제 48조의 5 ③항 참조.

IV. 비정상적인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성립상의 법적 문제

1. 진의아닌 의사표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에는 상호 여러 가지 진술이 오고가는 것이 보통인데,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행하는 진술을 의사표시라고 정의할 수 있다.⁴⁸⁾ 그런데 진의아닌 의사표시란 의사표시를 행한 당사자가 자신의 진의가 아님을 알면서 행한 의사표시를 말하는 바, 이는 의사표시를 행한 자가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의사표시를 행한 자가 상대방과 通情한 허위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⁴⁹⁾와 구분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진의아닌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며,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⁵⁰⁾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의아닌 의사표시는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무효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표의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무효화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행한 표의자로 하여금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표의자 스스로 그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진의아닌 의사표시는 자연적 의사표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자적 의사표시에서도 발생될 수 있다. 즉 컴퓨터를 이용해 의사표시를 행하는 자가 자신의 의사와는 다른 전자적 의사자를 선택하여 입력시킴으로써, 컴퓨터가 입력자의 의사와는 다른 표시를하게 되는 경우를 진의아닌 의사표시라 할 수 있다. 이는 표의자가 자신의 진실한 의사와 전자적 의사간의 불일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하에서 행한 결과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우리나라 민법 제 107조에 적용시켜 보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해당 전자적 의사표시가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될 수 있게 된다.⁵¹⁾ 그러므로 표의자가 자신의 진실한 의사와 일치하지 않는 입력행위에 의해 스스로 발생시킨 컴퓨터상의 전자적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 할 수 있다.

48) 이시환, 「무역계약론」, 대왕사, 1997, p.72 참조.

49) 우리나라 민법 제 108조 참조.

50) 우리나라 민법 제 107조 ①항 참조.

51) 오병철, 전계 논문, p.136 참조.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전자적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자연적 의사표시의 경우에 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한 하자가 발생될 수 있다. 여기에서 「하자」란 “의사표시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표의자가 자신의 판단이 사실과 다름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민법 제 109조에 의하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적 의사표시의 경우에도 중요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서 그 하자에 대하여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시킬 수 있게 된다.

전자적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장치나 네트워크 등의 하자로 인해 착오가 발생될 수 있는 바, 그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즉 입력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정보처리장치의 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정보처리장치나 프로그램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네트워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그 각각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입력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입력조작과정에서 하자가 발생된 것이 아니라 이미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의 의미에 대한 표의자의 착오가 있는 경우, 이는 입력조작상의 하자와는 다른 문제로 취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 이용자가 그의 결심과정에서 특정 사정에 대한 옳지 못한 관념을 갖게 됨으로써 어떤 하자를 발생시킨 경우, 이러한 옳지 못한 관념을 갖는 것은 동기의 착오로 취급되어야 한다.⁵²⁾ 법적으로 동기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그 취소가 불가능하며, 표시상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그 취소가 가능해진다.⁵³⁾

따라서 입력된 자료상의 가격이나 단위표시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러한 전자적 의사표시는 동기의 착오로 간주됨으로써 원칙적으로 표의자가 취소시킬 수 없게 된다. 또한 정확하지 못한 보고가 컴퓨터에 입력된 경우 역시 그 취소가능성이 부인되고 있다. 즉 컴퓨터상에 미리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는 표의자로 하여금 이를 근거로 어떤 특정의 의사를 형성하도록 하는 장치의 구성부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표의자는 이 구성부분에서 발생된 하자 또는 착오의 결과로 발생된 의사표시에 대하여 착오를 근거로 취소시킬 수 없게 된다.

(2) 정보처리장치의 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

표의자가 컴퓨터 등과 같은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적 의사표시를 행하는 경우 키보드와 같은 입력장치를 이용한 입력행위가 반드시 수반된다. 그런데 표의자가 이러한

52) 오병철, 전개 논문, p.140 참조.

53) 최경진, 「전자상거래와 법」, 현실과 미래, 1998, p.115, <next step> 참조.

입력행위를 행하는 과정에서 조작상의 실수가 빈번하게 발생되기도 한다. 이러한 입력과정에서의 하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지배적인 견해는 표시상의 착오로 취급하고 있다.⁵⁴⁾

표의자의 입력과정에서의 실수를 표시상의 착오로 간주할 경우, 이러한 전자적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취소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데이터 입력시 보조자의 조작실수에 의한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도 역시 그 취소가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서 표시상의 착오는 우리나라 민법 제 109조에 의거하여, 해당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즉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취소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중요한 점은 중대한 과실에 대한 판단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가지 예를 들면 표의자가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잡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함으로써 실수하게 된 경우, 이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시킬 수 없게 된다.

(3) 정보처리장치나 프로그램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정보처리장치와 같은 하드웨어」상에 하자가 있어서 하자있는 전자적 의사표시가 행해진 경우 이를 어떠한 착오의 유형으로 간주할 것인가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하여 독일 학설에서는 동기의 착오로 인정하는 견해, 동기의 착오에 포함시킬 수 있는 계산의 착오로 인정하는 견해, 표시상의 착오로 인정하는 견해 등 다양하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동기의 착오나 계산의 착오로 인정할 경우에는 그 취소가 불가능하며, 표시상의 착오로 간주할 경우에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지의 여부와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거해 그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상의 하자에 근거해 하자있는 전자적 의사표시가 행해진 경우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독일의 학설 및 우리나라 학설에서는 동기의 착오로 간주함으로써 그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표시상의 착오로 간주하여 그 취소가 인정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표시상의 착오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표의자가 프로그램상에 하자가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표의자에게 프로그램상에 흡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해 본 후 거래에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시킬 수는 없으므로, 표의자에게 그 취소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해 주자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후자의 주장이 전자의 주장보다 더 설득력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정보처리장치의 하드웨어나 프로그램상의 소프트웨어 자체에 하자가 있음으로써 전자적 의사표시상의 하자가 발생된 경우, 이는 컴퓨터나 각종 프로그램 등에 의해 의사표시과정상의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표시상의 착오로 보는 것이 타당하

54) 최경진, 전계서, p.117 ; 오병철, 전계 논문, p.143 참조.

다 하겠다.⁵⁵⁾ 따라서 우리나라 민법 제 109조에 의거해 그 취소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며, 컴퓨터나 프로그램상의 하자를 일반인들이 확인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원칙에 따를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상의 하자로 인해 전자적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에 하자가 발생된 경우, 표의자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자신이 행한 의사표시를 취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4) 네트워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네트워크에 하자가 있음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경우로는 ① 네트워크의 하자로 인해 전자적 의사표시가 전달되지 않고 유실된 경우, ② 네트워크의 하자로 인해 전자적 의사표시가 잘못 전달된 경우, ③ 네트워크에 하자가 발생되어 하자있는 전자적 의사표시가 전달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⁵⁶⁾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의 유형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은 의사표시의 부도달 문제라 할 수 있으며, 착오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세 번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째 유형 역시 이미 완성된 내용의 전자적 의사표시가 네트워크상의 하자로 흠이 생겨 전달된 것으로써 착오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달위험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전달위험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가 문제되겠지만, 본고의 제3장에서 검토해 보았듯이 전자적 의사표시의 부도달로 인한 위험은 결과적으로 발신자인 표의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가 발신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이에 관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수 있다.

3.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란 의사표시의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행하는 악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리고 강박이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협함으로써 공포심을 자아내게 하여 그 자유의사를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⁵⁷⁾ 강박은 계약당사자 자신은 물론 그의 배우자나 부모 및 자녀에 대하여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재산을 불법으로 파손시킴으로써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경우 등에도 성립될 수 있게 된다.⁵⁸⁾

전자적 의사표시의 경우에도 자연적 의사표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사형성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을 수 있는 바, 예를 들면 의사형성의 단계에 欺罔을 하여 입력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로의 전환과정(프로그램 선정단계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

55) 최경진, 전계서, p.117 참조.

56) 최경진, 상계서, p.118.

57) P.S. Atiyah, An Introduction to the Law of Contract, 4th ed., Oxford : Clarendon Press, 1989, p.236.

58) 이시환, 전계서, p.74 참조.

여 입력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민법 제 1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자연적 의사표시와 전자적 의사표시를 구분할 필요없이 그 취소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전자적 의사표시를 행함에 있어서 제 3자에 의한 강박(위협이나 협박)은 컴퓨터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행해지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역시 우리나라 민법 제 110조에 의거하여 그 취소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컴퓨터망을 통하여 표의자의 컴퓨터에 일정한 조작⁵⁹⁾을 몰래 함으로써 표의자가欺罔당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는 사기에 의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문제로 해결하기보다는 불법행위의 문제로 취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⁶⁰⁾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상대 당사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외부로부터 입력되어야 할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제 3자가 그릇된 데이터를 제공해 줌으로써 컴퓨터의 의사구체화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는 경우를 사기나 강박에 의한 전자적 의사표시로 인정할 경우, 이는 제 3자에 의한 사기 또는 강박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상대방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의사표시를 취소시킬 수 없게 된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표의자가 취소시키지 못함으로써 해당 위험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중 표의자가 정보처리장치의 이용과정에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서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정보처리장치나 프로그램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표시상의 착오로 간주하여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성이 높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표의자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바, 그 근거로써 상대방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착오자의 취소로 인해 해당 법률행위가 무효화됨으로써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⁶¹⁾ 그런데 오늘날 신속성을 요하는 대량거래나 전자상거래에서 이용되는 전자적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와 거래의 안전성 확보가 특별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컴퓨터의 이용에 수반되는 위험을 상대방에게 부과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민법 제 109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적 의사표시를 취소시킬 수 없게 하는 것은 미흡한 점이 많다고

59) 예를 들어 해킹을 통하여 상대방의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변경시키는 경우 등을 의미함.

60) 오병철, 전계 논문, p.154 참조.

61) 오병철, 전계 논문, p.152 참조.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표의자의 취소를 가능한 한 제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적 의사표시 수령자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경우로 써, 예를 들어 ① 수령자가 해당 전자적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② 수령자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③ 수령자가 고의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해 착오를 유발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표의자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장차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성립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도 폭넓은 연구가 요망됨은 물론 거래당사자들 중 어느 한 당사자쪽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V. 요약 및 결론

본 고에서는 UNCITRAL에서 제정한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과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기본법(안)을 참조하여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성립상의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청약의 경우나 승낙의 경우 모두 전자적 의사표시 방식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특정 정보를 보내는 송신(발신)시점과 이러한 정보를 상대방이 취득하는 수신(도달) 시점과의 구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송신 시점에 관하여 본 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계약성립을 위한 승낙의 효력발생시점과 관련하여 격지자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민법과 영미법에서 비엔나 협약과는 달리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본 고에서는 전자적 의사표시를 대화자간의 의사표시로 보지 않고 격지자간의 의사표시로 파악하였는 바, 그 근거로써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표시는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화나 신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신시점은 계약성립시점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작성자와 수신자간에 다른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신시점은 송신된 전자적 의사표시가 작성자 또는 작성자를 대리하여 데이터 메시지를 발신한 대리인의 지배를 벗어나 어떤 정보시스템에 들어간 때가 된다. 여기에서 어떤 정보시스템이란 첫째로 당사자간의 컴퓨터가 컴퓨터망을 통해 직접 연결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컴퓨터가 될 것이고, 둘째로 당사자들의 컴퓨터가 특정 전자사서함에 연결되어 그곳을 통해 전달하고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사서함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컴퓨터망을 통해 직접 연결되어 전자적 의사표시를 주고받는 경우에는 송신자의 컴퓨터가 구체화된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송할 수 있게 만들어 상대방의 컴퓨터를 향해 보내지는 순간 전자적 의사표시의 발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전자적 의사표시가 전자사서함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에는 수신자인 상대방이 컴퓨터를 켰을 때 자신을 위해 보관된 정보가 전자사서함에 있음을 알게 되고, 이때 수신자는 그 전자적 의사표시의 수령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전자사서함을 이용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발신시점은 해당 정보가 전자사서함에 입력되는 순간 발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 결과 이러한 경우 도달주의 원칙을 기준으로 볼 때 발신자는 수신자가 해당 정보를 수령해 가기 이전까지 청약이건 승낙이건 그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작성자가 송신한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확인통지를 요구했거나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수신확인통지를 약정한 경우로써, 약정기간 내에 또는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수신자로부터 수신확인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작성자는 그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신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전자적 의사표시의 도달시점과 관련하여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에 의하면 ‘작성자가 데이터 메시지에 수신확인조건을 기재한 경우에는 수신확인이 도착되기 전까지는 그 데이터 메시지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작성자가 수신확인 메시지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된 데이터 메시지가 수신자에게 수신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신확인통지가 없는 경우 무효임을 조건으로 전자적 의사표시를 송신한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가 도달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전자적 의사표시의 도달은 물론 송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무효처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직접 컴퓨터망에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대방 컴퓨터의 모뎀에 접속되는 순간을 도달시점으로 볼 수 있고, 전자사서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발신자의 의사표시가 전자사서함에 저장된 사실을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컴퓨터가 인식하여 상대방이 그 전자적 의사표시를 전송하도록 명령하는 순간에 도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도달주의가 채택되는 경우 발신자는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컴퓨터가 자신의 컴퓨터에 전송하도록 명령하기 전까지는 해당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야간이나 또는 상대방이 근무하지 않는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전자적 의사표시가 전자사서함에 전달된 경우에는 수신자의 전송명령이나 수신자 컴퓨터의 자동화된 전송명령시점 이전에는 해당 의사표시가 도달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한편 전자적 의사표시가 인간에 의한 자연적 의사표시와 동일시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본 고에서는 이를 동일하게 인정함으로써, 전자적 의사표시는 기존의 법률사실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민법에서 자연적 의사표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토대로 검토하였다. 다만 컴퓨터의 기능을 인간의 구체적으로 완성된 의사를 단순히 표시하거나 전달하는 수준 이상으로 컴퓨터 이용자의 의사영역에 개입하는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전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특별한 문제들을 함께 검토하였다. 즉 그 대표적인 예로써 표의자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중에서 입력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든지, 정보처리장치의 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든지, 정보처리장치나 프로그램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든지, 네트워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컴퓨터라는 수단을 이용한 의사전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중 표의자가 정보처리장치의 이용과정에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서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취소가 가능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정보처리장치나 프로그램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표시상의 착오로 간주하여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표의자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바, 그 근거로써 상대방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착오자의 취소로 인해 해당 법률행위가 무효화됨으로써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신속성을 요구하는 대량거래나 전자상거래에서 이용되는 전자적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와 거래의 안전성 확보가 특별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컴퓨터의 이용에 수반되는 위험을 상대방에게 부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민법 제 109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적 의사표시를 취소시킬 수 없게 하는 것은 미흡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체결과정에서 표의자의 취소를 가능한 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자적 의사표시 수령자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경우로써, 예를 들어 ① 수령자가 해당 전자적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② 수령자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③ 수령자가 고의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해 착오를 유발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자신의 전자적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가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 중 어느 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도 폭넓은 사례검토를 통한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직 관련사례들이 많지 않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는 바, 예를 들어 가상적인 사례들을 설정함으로써 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연구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겨 두고 본 고의 끝을 맺는다.

참고 문헌

1. 국내문헌

- 김선팽, 「무역계약론」, 느티나무, 1995.
_____, 「비엔나협약 해설」,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7.
이시환, 「무역계약론」, 대왕사, 1997.
최경진, 「전자상거래와 법」, 현실과 미래, 1998.
오병철, “전자적 의사표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년 12월.
지원림, “컴퓨터와 관련된 민사법적 문제 : 컴퓨터법의 정립을 위한 시론”, 「성곡논총」, 제26집 상권, 1995.

최경진, “전자화된 의사표시와 전자계약①”, 「정보산업」, 통권 179호, 1997년 3월.

최경진, “전자화된 의사표시와 전자계약②”, 「정보산업」, 통권 180호, 1997년 4월.

2. 외국문헌

Atiyah, *An Introduction to the Law of Contract*, 4th ed., Oxford:Clarendon Press, 1989.

Guest, A.G., *Anson's Law of Contract*, 26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_____, ed., *Benjamin's Sale of Goods*, 2nd ed., London:Sweet & Maxwell, 1981.

Major, w.t., *Cases in Contract Law*, 2nd ed., MacDonard & Evans, 1977.

Reiter, Barry J. & Swan, John, *Studies on Contract Law*, Toronto:Butterworth & Co., Ltd., 1980.

Tilotson, John, *Contract Law of Perspective*, London:Betterworth & Co., Ltd., 1981.

3. 관련법규

우리나라 민법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법(안)

우리나라의 무역자동화법

우리나라의 화물유통촉진법

Vienna 협약(1980)

미국의 UCC(1953)

영국의 Sale of Goods Act(1979)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1998)